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등기번호	655396	
등록번호	145211-0021112	
상 호	주식회사 지아이이노베이션 (GI Innovation Inc.)	· · ·
본 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에이동 1116호(문정동)	2018.05.05 변경 2018.05.09 등기
공고방법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i-innovation.com)에 게재한다 .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아시아경제신문에 공고하기로 한다.	· · ·

1주의 금액	금 500 원	2018.05.01 변경 2018.05.03 등기
--------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0 주	2018.06.29 변경 2018.06.29 등기
------------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 연월일 등기 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15,099,913 주	2020.06.03 변경
보통주식	6,755,027 주	2020.06.09 등기
1차전환우선주식	1,071,427 주	
2차전환우선주식	769,230 주	
3차전환우선주식	1,969,229 주	
4차전환우선주식	1,800,000 주	
5차전환우선주식	1,200,000 주	
6차전환우선주식	1,285,000 주	
7차전환우선주식	250,000 주	
금 7,549,956,500 원		

목 적	
1. 의약품, 수의약품, 의약외품의 개발 및 제조, 도소매, 무역업	<2020.05.07 변경 2020.05.14 등기>
1. 건강기능식품의 개발 및 제조, 도소매, 무역업	
1. 화장품 개발 및 제조, 도소매, 무역업	
1. 개발한 신기술의 사용권대여 및 양도업	
1. 수입의약품, 수입건강기능식품, 수입화장품의 판매업 및 위탁업	
1. 동물용 의약품 및 기능성 사료 등의 개발 및 제조, 도소매, 무역업	
1. 지적재산권 관리업	
1. 기술 연구 및 연구 용역업	<2020.05.07 변경 2020.05.14 등기>
1. 시장조사, 경영자문, 컨설팅업, 위탁업무 지원사업	<2020.05.07 변경 2020.05.14 등기>
1.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2020.05.07 추가 2020.05.14 등기>
1. 각 호에 연관되는 일체의 부대사업, 투자, 수출입업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655396
------	--------

<2020.05.07 추가 2020.05.14 등기>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장명호 680603-***** 2017년 07월 19일 취임	2017년 07월 19일 등기
감사 박상훈 720225-***** 2018년 02월 01일 취임	2018년 02월 01일 등기
사내이사 남수연 661018-***** 2018년 12월 11일 취임	2018년 12월 12일 등기
<del>대표이사 남수연 66101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30, 121동 1501호(보정동, 행원마을 동아솔레시아아파트)</del> 2018년 12월 11일 취임	<del>2018년 12월 12일 등기</del>
대표이사 남수연 661018-*****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6, 103동 202호(성수동1가, 트리마제) 2020년 02월 04일 주소변경	2020년 03월 10일 등기
사내이사 오영민 780318-***** 2019년 11월 26일 취임	2019년 11월 29일 등기
사내이사 조영규 690121-***** 2019년 11월 26일 취임	2019년 11월 29일 등기
사내이사 김진만 821024-***** 2019년 11월 26일 취임	2019년 11월 29일 등기
대표이사 장명호 68060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1길 50, 101동 902호(북아현동, 신촌푸르지오) 2020년 04월 16일 취임	2020년 04월 22일 등기
사외이사 이은직 590815-***** 2020년 05월 07일 취임	2020년 05월 14일 등기
사외이사 류종우 770304-***** 2020년 05월 07일 취임	2020년 05월 14일 등기

**종류주식의 내용**

**1차전환우선주식**

-1차 전환우선주식에 관한 내용-

1. 의결권에 관한 사항

① 1차전환우선주의 주주는 주식 1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1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1차전환우선주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1차전환우선주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2.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 1차전환우선주는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1차전환우선주를 보유하는 동안 1주당 발행가액 기준 연 [1] %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② 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종류 및 조건의 우선주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③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1차전환우선주의 인수인은 1차전환우선주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차전환우선주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위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투자자는 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복리 [0]%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② 1차전환우선주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1차전환우선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권리가 있다.

4. 전환권에 관한 사항

① 전환기간

1차전환우선주의 주주(회사는 전환 청구권을 갖지 아니한다)는 그 발행일로부터 [5]년 경과일(이하 “존속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언제든지 1차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1차전환우선주의 주주는 1차전환우선주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1차전환우선주는 그 만료일에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

② 전환방법

1. 1차전환우선주의 주주는 1차전환우선주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2. 전환청구를 한 경우 전환은, 1차전환우선주의 주주가 전환될 1차전환우선주의 주권을 제출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3. 1차전환우선주의 주주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 받게 되는 경우 상기 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4. 회사는 1차전환우선주의 주권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당해 1차전환우선주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 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야 하고, 관련 주식명의개서절차 등의 절차를 이행한다.

5. 1차전환우선주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보통주식의 수는 ‘전환청구 대상인 1차전환우선주의 발행가액 총액’ 을 제3항(전환비율)에 의거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으로 나눈 수를 절사하여 확정하며, 회사는 단주에 전환가액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③ 전환비율

1. 1차전환우선주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 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하되, 제2호 이하의 규정에 따라 ‘전환가액’ 이 조정되는 경우 ‘전환가액’ 에 대한 최초 발행가액의 비율을 ‘전환비율’ 로 한다.

2. 회사가 기업공개를 통해 회사의 주식을 상장(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는 것을 의미하며, 본 계약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등기번호

655396

하거나 주권상장법인(SPAC을 포함한다)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통하여 상장을 하는 경우, 공모단가 또는 교환비율 등의 산정을 위한 주식평가액(이하 “공모단가 등”)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1차전환우선주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1차전환우선주의 전환가액을 공모단가 등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한다.

3. 회사가 1차전환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상1상(IND 승인을 기준으로 한다)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전환가액을 최초 전환가액(제3호 내지 제9호에 따라 전환가액이 조정되었을 경우 조정된 전환가액을 의미한다)의 [70%]로 조정한다. 단, 2년 이내 회사의 IPO중 단 한 건이라도 license-out 될 경우 전환가액의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4. 회사가 1차전환우선주의 전환 전에 1차전환우선주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 등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 관련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 산식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 발행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5. 1차전환우선주의 전환 전에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회사의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아래 산식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기발행주식수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6. 회사의 다른 법인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통한 기업결합 시(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액이 그 당시의 1차전환우선주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1차전환우선주의 전환가액을 그 하회하는 평가액으로 조정한다.

7.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1차전환우선주의 전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8.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가액 및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9. 위 각호의 사안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순서에 따라 누적하여 계산된 전환가액 또는 각호에 의해 산출된 전환가액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액을 정하며, 전환비율 또한 이에 따라 조정한다.

④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1차전환우선주의 전환청구기간 만료 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1차전환우선주의 전환으로 발행 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⑤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등(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 포함)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5.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차전환우선주는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 및 조건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2020년 06월 03일 변경 2020년 06월 09일 등기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2차전환우선주식

-2차 전환우선주식에 관한 내용-

1. 의결권에 관한 사항

- ① 2차 전환우선주는 일(1)주당 일(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2차 전환우선주의 주주는 “피투자기업”의 주주총회의 의결에 회부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 ② 2차 전환우선주가 4.에서 정한 전환조건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보통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 ③ 2차 전환우선주의 주주에게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2차 전환우선주 주주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2.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① 2차 전환우선주는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서 2차 전환우선주의 주주는 액면가 기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배당 받는다. “피투자기업”은 배당가능 이익이 있는 경우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우선배당률에 미달하는 부족 배당금은 차기에 이월하여 차기의 배당금과 함께 누적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② 2차 전환우선주에 대한 초년도의 배당 기산일은 2차 전환우선주 발행일이 속하는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된 것으로 보고 배당금을 계산한다.
- ③ 2차 전환우선주의 주주는 보통주의 배당률이 2차 전환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 ④ 2차 전환우선주의 주주는 주식배당의 경우 2차 전환우선주 주주의 선택에 따라 2차 전환우선주와 같은 종류의 우선주 또는 2차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보통주를 배당 받는다.

3.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① 2차 전환우선주 주주는 “피투자기업”이 청산될 때 잔여재산분배에 대하여 전환우선주로서 투자한 주금 총액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는다.
- ② 2차 전환우선주 주주는 보통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2차 전환우선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4. 전환권에 관한 사항

① 전환기간

2차 전환우선주의 주주는 2차 전환우선주의 최초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2차 전환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전환방법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③ 전환비율

1. 2차전환 우선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2. “피투자기업”이 제16조에서 규정된 2차 전환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발행가격 등”을 정하여 “신주 등 발행”하는 경우 “회사” 및 “조합”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전환조건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단, 전환조건은 “전환비율” 즉, 2

등기번호

655396

차전환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를 말한다.

2차 전환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 = ( “조합” 의 2차 전환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 / ( “조합” 의 2차 전환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등” )

한편, 2차 전환우선주 발행 전에 기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의 주당 발행가격이 2차 전환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본 항에 의해 전환조건이 조정되지 않는다.

3. “피투자기업” 의 “기업공개” 및 기업 인수, 합병 등과 관련하여, 2차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시 전환비율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조정된다.

(1) “피투자기업” 이 “기업공개” 하는 경우, 2차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시 전환비율은 아래 중 높은 값으로 재조정 된다.

㉠ 직전 조정된 전환비율(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조정된 전환비율을 말한다)

㉡ 「2차 전환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 을 「 “기업공개” 시의 ‘주당공모가격’ 의 70%에 해당하는 가격」 으로 나눈 값

(2) “피투자기업” 이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및 해외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 이라 한다)을 통해 우회상장(이하 “우회상장” 이라 한다) 하거나, “증권시장” 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스팩 포함) 또는 비상장 기업과의 인수, 합병 등의 거래(이하 “M&A” 라 한다)를 추진하는 경우, 2차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시 전환비율은 아래 중 높은 값으로 재조정 된다.

㉠ 직전 조정된 전환비율(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조정된 전환비율을 말한다)

㉡ 「2차 전환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 을 「 “우회상장” 또는 “M&A” 시의 ‘주당가치평가액’ 의 70%에 해당하는 가격」 으로 나눈 값(단, ‘주당가치평가액’ 은 “우회상장” 또는 “M&A” 와 관련하여 회계법인에 의해 수행된 기업가치평가를 통해 산정된 “피투자기업” 의 1주당 가치평가액을 말한다)

4. 회사는 본 계약일 이후로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임상1상 (IND 승인 기준)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 제 1조 1항 3호의 주식의 발행가액(인수가액)의 70% 가격으로 보통주 전환가격이 조정된다. 단, License-out이 발생할 경우 동 조항은 면책된다.

5. “피투자기업” 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조건은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6. “피투자기업” 의 분할 또는 합병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2차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우선주로서 받을 수 있는 대가보다 큰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보장되도록 2차 전환우선주의 전환조건이 조정된다.

7. 본 조에 의거한 전환비율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2차 전환우선주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보통주의 발행가액은 액면가를 하회할 수 없으며 “피투자기업” 은 “조합” 의 전환권 행사 이전에 유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보통주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 될 경우에는 유무상증자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8. 본 조에 의거한 전환비율의 조정이 있게 된 경우, “피투자기업” 은 1주일 이내에 “피투자기업” 의 비용으로 본 조에 의한 조정치를 계산한 후, 조정 사유 및 내역에 대한 설명을 기재한 ‘우선주 전환비율 조정 확인증서’ 를 “회사” 또는 “조합” 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9. 본 조의 각호에도 불구하고 조정되는 전환비율이 본 조 다른 항에 의한 기존의 전환조건 조정에 의해 확정된 전환비율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조건은 기존에 확정된 전환비율을

등기번호	655396
------	--------

유지한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 조의 각 호는 중복적으로 적용한다.

④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 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으로 발행 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⑤ 기타

(1) 2차 전환우선주에 대한 초년도의 배당 기산일은 2차 전환우선주 발행일이 속하는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된 것으로 보고 배당금을 계산한다

(2) 2차 전환우선주의 주주는 보통주의 배당률이 2차 전환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5.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2차 전환우선주의 주주는 주식배당의 경우 2차 전환우선주 주주의 선택에 따라 2차 전환우선주와 같은 종류의 우선주 또는 2차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보통주를 배당 받는다

2020년 06월 03일 변경                      2020년 06월 09일 등기

3차전환우선주식

-3차 전환우선주식에 관한 내용-

1. 의결권에 관한 사항

① 3차 전환우선주는 일(1)주당 일(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3차 전환우선주의 주주는 “피투자기업”의 주주총회의 의결에 회부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② 3차 전환우선주가 4.에서 정한 전환조건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보통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③ 3차 전환우선주의 주주에게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3차 전환우선주 주주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2.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 3차 전환우선주는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서 3차 전환우선주의 주주는 액면가 기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배당 받는다. “피투자기업”은 배당가능 이익이 있는 경우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우선배당률에 미달하는 부족 배당금은 차기에 이월하여 차기의 배당금과 함께 누적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3차 전환우선주에 대한 초년도의 배당 기산일은 3차 전환우선주 발행일이 속하는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된 것으로 보고 배당금을 계산한다.

③ 3차 전환우선주의 주주는 보통주의 배당률이 3차 전환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④ 3차 전환우선주의 주주는 주식배당의 경우 3차 전환우선주 주주의 선택에 따라 3차 전환우선주와 같은 종류의 우선주 또는 3차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보통주를 배당 받는다.

3.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 3차 전환우선주 주주는 “피투자기업”이 청산될 때 잔여재산분배에 대하여 전환우선주로서 투자한 주금 총액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는다.

② 3차 전환우선주 주주는 보통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3차 전환우선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

를 받는다.

4. 전환권에 관한 사항

① 전환기간

3차 전환우선주의 주주는 3차 전환우선주의 최초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3차 전환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전환방법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③ 전환비율

1. 3차 전환우선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2. “피투자기업”이 3차 전환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발행가격 등”을 정하여 “신주 등 발행”하는 경우 “회사” 및 “조합”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전환조건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단, 전환조건은 “전환비율” 즉, 3차 전환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를 말한다.

3차 전환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 = ( “조합”의 3차 전환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 / ( “조합”의 3차 전환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등” )

한편, 3차 전환우선주 발행 전에 기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의 주당 발행가격이 3차 전환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본 항에 의해 전환조건이 조정되지 않는다.

3. “피투자기업”의 “기업공개” 및 기업 인수, 합병 등과 관련하여, 3차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시 전환비율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조정된다.

(1) “피투자기업”이 “기업공개” 하는 경우, 3차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시 전환비율은 아래 중 높은 값으로 재조정 된다.

㉠ 직전 조정된 전환비율(4.③.1.항 및 4.③.2.항에 의해 조정된 전환비율을 말한다)

㉡ 「3차 전환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기업공개” 시의 ‘주당공모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나눈 값

(2) “피투자기업”이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및 해외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을 통해 우회상장(이하 “우회상장”이라 한다) 하거나,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스팩 포함) 또는 비상장 기업과의 인수, 합병 등의 거래(이하 “M&A”라 한다)를 추진하는 경우, 3차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시 전환비율은 아래 중 높은 값으로 재조정 된다.

㉠ 직전 조정된 전환비율(4.③.1.항 및 4.③.2.항에 의해 조정된 전환비율을 말한다)

㉡ 「3차 전환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우회상장” 또는 “M&A” 시의 ‘주당가치평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나눈 값(단, ‘주당가치평가액’은 “우회상장” 또는 “M&A”와 관련하여 회계법인에 의해 수행된 기업가치평가를 통해 산정된 “피투자기업”의 1주당 가치평가액을 말한다)

4. 회사는 본 계약일 이후로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임상1상 (IND 승인 기준)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 3차 전환우선 주식의 발행가액(인수가액)의 70% 가격으로 보통주 전환가격이 조정된다. 단, License-out이 발생할 경우 동 조항은 면책된다.



등기번호	655396
------	--------

<p>5. “피투자기업”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조건은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p> <p>6. “피투자기업”의 분할 또는 합병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3차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우선주로서 받을 수 있는 대가보다 큰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보장되도록 3차 전환우선주의 전환조건이 조정된다.</p> <p>7. 본 조에 의거한 전환비율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3차 전환우선주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보통주의 발행가액은 액면가를 하회할 수 없으며 “피투자기업”은 “조합”의 전환권 행사 이전에 유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보통주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 될 경우에는 유무상증자를 실시하지 아니한다.</p> <p>8. 본 조에 의거한 전환비율의 조정이 있게 된 경우, “피투자기업”은 1주일 이내에 “피투자기업”의 비용으로 본 조에 의한 조정치를 계산한 후, 조정 사유 및 내역에 대한 설명을 기재한 ‘우선주 전환비율 조정 확인증서’를 “회사” 또는 “조합”에게 제출하도록 한다.</p> <p>9. 본 조의 각호에도 불구하고 조정되는 전환비율이 본 조 다른 항에 의한 기존의 전환조건 조정에 의해 확정된 전환비율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조건은 기존에 확정된 전환비율을 유지한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 조의 각 호는 중복적으로 적용한다.</p> <p>④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 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으로 발행 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p> <p>⑤ 기타 (1) 3차 전환우선주에 대한 초년도의 배당 기산일은 3차 전환우선주 발행일이 속하는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된 것으로 보고 배당금을 계산한다 (2) 3차 전환우선주의 주주는 보통주의 배당률이 3차 전환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p> <p>5.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3차 전환우선주의 주주는 주식배당의 경우 3차 전환우선주 주주의 선택에 따라 3차 전환우선주와 같은 종류의 우선주 또는 3차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보통주를 배당 받는다.</p> <p>2020년 06월 03일 변경      2020년 06월 09일 등기</p> <p style="text-align: center;">4차전환우선주식</p> <p>-4차 전환우선주식에 관한 내용-</p> <p>1. 의결권에 관한 사항 ① 4차 전환우선주는 일(1)주당 일(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4차 전환우선주의 주주는 “피투자기업”의 주주총회의 의결에 회부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② 4차 전환우선주가 4.에서 정한 전환조건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보통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③ 4차 전환우선주의 주주에게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전에 대하여 4차 전환우선주 주주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p> <p>2.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 4차 전환우선주는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서 4차 전환우선주의 주주는 액면가 기준</p>
--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655396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배당 받는다. “피투자기업”은 배당가능 이익이 있는 경우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우선배당률에 미달하는 부족 배당금은 차기에 이월하여 차기의 배당금과 함께 누적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4차 전환우선주에 대한 초년도의 배당 기산일은 4차 전환우선주 발행일이 속하는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된 것으로 보고 배당금을 계산한다.

③ 4차 전환우선주의 주주는 보통주의 배당률이 4차 전환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④ 4차 전환우선주의 주주는 주식배당의 경우 4차 전환우선주 주주의 선택에 따라 4차 전환우선주와 같은 종류의 우선주 또는 4차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보통주를 배당 받는다.

3.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 4차 전환우선주 주주는 “피투자기업”이 청산될 때 잔여재산분배에 대하여 전환우선주로서 투자한 주금 총액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는다.

② 4차 전환우선주 주주는 보통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4차 전환우선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4. 전환권에 관한 사항

① 전환기간

4차 전환우선주의 주주는 4차 전환우선주의 최초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4차 전환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전환방법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③ 전환비율

1. 4차 전환우선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2. “피투자기업”이 4차 전환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발행가격 등”을 정하여 “신주 등 발행”하는 경우 “회사” 및 “전환우선주주”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전환조건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단, 전환조건은 “전환비율” 즉, 4차 전환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를 말한다.

4차 전환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 = ( “전환우선주주”의 4차 전환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 / ( “전환우선주주”의 4차 전환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등” )

한편, 4차 전환우선주 발행 전에 기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의 주당 발행가격이 4차 전환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본 항에 의해 전환조건이 조정되지 않는다.

3. “피투자기업”의 “기업공개” 및 기업 인수, 합병 등과 관련하여, 4차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시 전환비율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조정된다.

(1) “피투자기업”이 “기업공개” 하는 경우, 4차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시 전환비율은 아래 중 높은 값으로 재조정 된다.

㉠ 직전 조정된 전환비율(4.③.1.항 및 4.③.2.항에 의해 조정된 전환비율을 말

한다)

㉞ 「4차 전환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기업공개” 시의 ‘주당공모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나눈 값

(2) “피투자기업”이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및 해외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을 통해 우회상장(이하 “우회상장”이라 한다)하거나,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스팩 포함) 또는 비상장 기업과의 인수, 합병 등의 거래(이하 “M&A”라 한다)를 추진하는 경우, 4차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시 전환비율은 아래 중 높은 값으로 재조정 된다.

㉟ 직전 조정된 전환비율(4.㉓.1.항 및 4.㉓.2.항에 의해 조정된 전환비율을 말한다)

㉞ 「4차 전환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우회상장” 또는 “M&A” 시의 ‘주당가치평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나눈 값(단, ‘주당가치평가액’은 “우회상장” 또는 “M&A”와 관련하여 회계법인에 의해 수행된 기업가치평가를 통해 산정된 “피투자기업”의 1주당 가치평가액을 말한다)

4. 회사는 본 계약일 이후로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임상1상 (IND 승인 기준)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 4차 전환우선 주식의 발행가액(인수가액)의 70% 가격으로 보통주 전환가격이 조정된다. 단, License-out이 발생할 경우 동 조항은 면책된다.

5. “피투자기업”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조건은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6. “피투자기업”의 분할 또는 합병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4차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우선주로서 받을 수 있는 대가보다 큰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보장되도록 4차 전환우선주의 전환조건이 조정된다.

7. 본 조에 의거한 전환비율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4차 전환우선주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보통주의 발행가액은 액면가를 하회할 수 없으며 “피투자기업”은 “전환우선주”의 전환권 행사 이전에 유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보통주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 될 경우에는 유무상증자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8. 본 조에 의거한 전환비율의 조정이 있게 된 경우, “피투자기업”은 1주일 이내에 “피투자기업”의 비용으로 본 조에 의한 조정치를 계산한 후, 조정 사유 및 내역에 대한 설명을 기재한 ‘우선주 전환비율 조정 확인증서’를 “회사” 또는 “전환우선주주”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9. 본 조의 각호에도 불구하고 조정되는 전환비율이 본 조 다른 항에 의한 기존의 전환조건 조정에 의해 확정된 전환비율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조건은 기존에 확정된 전환비율을 유지한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 조의 각 호는 중복적으로 적용한다.

④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 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으로 발행 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⑤ 기타

(1) 4차 전환우선주에 대한 초년도의 배당 기산일은 4차 전환우선주 발행일이 속하는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된 것으로 보고 배당금을 계산한다

(2) 4차 전환우선주의 주주는 보통주의 배당률이 4차 전환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등기번호	655396
------	--------

5.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4차 전환우선주의 주주는 주식배당의 경우 4차 전환우선주 주주의 선택에 따라 4차 전환우선주와 같은 종류의 우선주 또는 4차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보통주를 배당 받는다.

2020년 06월 03일 변경      2020년 06월 09일 등기

5차전환우선주식

-5차 전환우선주식에 관한 내용-

1. 의결권에 관한 사항

① 5차 전환우선주는 일(1)주당 일(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5차 전환우선주의 주주는 “피투자기업”의 주주총회의 의결에 회부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② 5차 전환우선주가 4.에서 정한 전환조건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보통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③ 5차 전환우선주의 주주에게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5차 전환우선주 주주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2.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 5차 전환우선주는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서 5차 전환우선주의 주주는 액면가 기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배당 받는다. “피투자기업”은 배당가능 이익이 있는 경우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우선배당률에 미달하는 부족 배당금은 차기에 이월하여 차기의 배당금과 함께 누적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5차 전환우선주에 대한 초년도의 배당 기산일은 5차 전환우선주 발행일이 속하는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된 것으로 보고 배당금을 계산한다.

③ 5차 전환우선주의 주주는 보통주의 배당률이 5차 전환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④ 5차 전환우선주의 주주는 주식배당의 경우 5차 전환우선주 주주의 선택에 따라 5차 전환우선주와 같은 종류의 우선주 또는 5차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보통주를 배당 받는다.

3.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 5차 전환우선주 주주는 “피투자기업”이 청산될 때 잔여재산분배에 대하여 전환우선주로서 투자한 주금 총액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는다.

② 5차 전환우선주 주주는 보통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5차 전환우선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4. 전환권에 관한 사항

① 전환기간

5차 전환우선주의 주주는 5차 전환우선주의 최초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5차 전환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전환방법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③ 전환비율

1. 5차 전환우선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2. “피투자기업”이 5차 전환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발행 가격 등”을 정하여 “신주 등 발행”하는 경우 “회사” 및 “전환우선주주”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전환조건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단, 전환조건은 “전환비율” 즉, 5차 전환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를 말한다.

5차 전환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 = ( “전환우선주주”의 5차 전환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 / ( “전환우선주주”의 5차 전환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등” )

한편, 5차 전환우선주 발행 전에 기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의 주당 발행가격이 5차 전환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본 항에 의해 전환조건이 조정되지 않는다.

3. “피투자기업”의 “기업공개” 및 기업 인수, 합병 등과 관련하여, 5차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시 전환비율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조정된다.

(1) “피투자기업”이 “기업공개” 하는 경우, 5차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시 전환비율은 아래 중 높은 값으로 재조정 된다.

㉠ 직전 조정된 전환비율(4.③.1.항 및 4.③.2.항에 의해 조정된 전환비율을 말한다)

㉡ 「5차 전환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기업공개” 시의 ‘주당공모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나눈 값

(2) “피투자기업”이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및 해외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을 통해 우회상장(이하 “우회상장”이라 한다)하거나,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스팩 포함) 또는 비상장 기업과의 인수, 합병 등의 거래(이하 “M&A”라 한다)를 추진하는 경우, 5차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시 전환비율은 아래 중 높은 값으로 재조정 된다.

㉠ 직전 조정된 전환비율(4.③.1.항 및 4.③.2.항에 의해 조정된 전환비율을 말한다)

㉡ 「5차 전환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우회상장” 또는 “M&A” 시의 ‘주당가치평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나눈 값(단, ‘주당가치평가액’은 “우회상장” 또는 “M&A”와 관련하여 회계법인에 의해 수행된 기업가치평가를 통해 산정된 “피투자기업”의 1주당 가치평가액을 말한다)

4. 회사는 본 계약일 이후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상1상 (IND 승인 기준)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 5차 전환우선 주식의 발행가액(인수가액)의 70% 가격으로 보통주 전환가격이 조정된다. 단, License-out이 발생할 경우 동 조항은 면책된다.

5. “피투자기업”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조건은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6. “피투자기업”의 분할 또는 합병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5차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우선주로서 받을 수 있는 대가보다 큰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보장되도록 5차 전환우선주의 전환조건이 조정된다.

7. 본 조에 의거한 전환비율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5차 전환우선주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보통주의 발행가액은 액면가를 하회할 수 없으며 “피투자기업”은 “전환우선주

등기번호	655396
------	--------

주”의 전환권 행사이전에 유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보통주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 될 경우에는 유무상증자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8. 본 조에 의거한 전환비율의 조정이 있게 된 경우, “피투자기업”은 1주일 이내에 “피투자기업”의 비용으로 본 조에 의한 조정치를 계산한 후, 조정 사유 및 내역에 대한 설명을 기재한 ‘우선주 전환비율 조정 확인증서’를 “회사” 또는 “전환우선주주”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9. 본 조의 각호에도 불구하고 조정되는 전환비율이 본 조 다른 항에 의한 기존의 전환조건 조정에 의해 확정된 전환비율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조건은 기존에 확정된 전환비율을 유지한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 조의 각 호는 중복적으로 적용한다.

④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 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으로 발행 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⑤ 기타

(1) 5차 전환우선주에 대한 초년도의 배당 기산일은 5차 전환우선주 발행일이 속하는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된 것으로 보고 배당금을 계산한다

(2) 5차 전환우선주의 주주는 보통주의 배당률이 5차 전환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5.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5차 전환우선주의 주주는 주식배당의 경우 5차 전환우선주 주주의 선택에 따라 5차 전환우선주와 같은 종류의 우선주 또는 5차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보통주를 배당 받는다.

2020년 06월 03일 변경                      2020년 06월 09일 등기

6차전환우선주식

-6차 전환우선주식에 관한 내용-

1. 의결권에 관한 사항

① 6차 전환우선주는 일(1)주당 일(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6차 전환우선주의 주주는 “피투자기업”의 주주총회의 의결에 회부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② 6차 전환우선주가 4.에서 정한 전환조건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보통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③ 6차 전환우선주의 주주에게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6차 전환우선주 주주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2.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 6차 전환우선주는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서 6차 전환우선주의 주주는 액면가 기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배당 받는다. “피투자기업”은 배당가능 이익이 있는 경우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우선배당률에 미달하는 부족 배당금은 차기에 이월하여 차기의 배당금과 함께 누적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6차 전환우선주에 대한 초년도의 배당 기산일은 6차 전환우선주 발행일이 속하는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된 것으로 보고 배당금을 계산한다.

③ 6차 전환우선주의 주주는 보통주의 배당률이 6차 전환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④ 6차 전환우선주의 주주는 주식배당의 경우 6차 전환우선주 주주의 선택에 따라 6차

등기번호

655396

전환우선주와 같은 종류의 우선주 또는 6차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보통주를 배당 받는다.

3.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 6차 전환우선주 주주는 “피투자기업”이 청산될 때 잔여재산분배에 대하여 전환우선주로서 투자한 주금 총액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는다.

② 6차 전환우선주 주주는 보통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6차 전환우선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4. 전환권에 관한 사항

① 전환기간

6차 전환우선주의 주주는 6차 전환우선주의 최초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6차 전환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전환방법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6차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③ 전환비율

1. 6차 전환우선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2. “피투자기업”이 6차 전환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발행가격 등”을 정하여 “신주 등 발행”하는 경우 “회사” 및 “전환우선주주”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전환조건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단, 전환조건은 “전환비율” 즉, 6차 전환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를 말한다.

6차 전환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 = ( “전환우선주주”의 6차 전환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 / ( “전환우선주주”의 6차 전환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등” )

한편, 6차 전환우선주 발행 전에 기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의 주당 발행가격이 6차 전환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본 항에 의해 전환조건이 조정되지 않는다.

3. “피투자기업”의 “기업공개” 및 기업 인수, 합병 등과 관련하여, 6차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시 전환비율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조정된다.

(1) “피투자기업”이 “기업공개” 하는 경우, 6차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시 전환비율은 아래 중 높은 값으로 재조정 된다.

㉠ 직전 조정된 전환비율(4.③.1.항 및 4.③.2.항에 의해 조정된 전환비율을 말한다)

㉡ 「6차 전환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기업공개” 시의 ‘주당공모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나눈 값

(2) “피투자기업”이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및 해외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을 통해 우회상장(이하 “우회상장”이라 한다)하거나,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스팩 포함) 또는 비상장 기업과의 인수, 합병 등의 거래(이하 “M&A”라 한다)를 추진하는 경우, 6차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시 전환비율은 아래 중 높은 값으로 재조정 된다.

㉠ 직전 조정된 전환비율(4.③.1.항 및 4.③.2.항에 의해 조정된 전환비율을 말한다)

㉡ 「6차 전환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우회상장” 또는 “M&A” 시의 ‘주당가치평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나눈 값(단, ‘주당가치평가액’은 “우회상장” 또는 “M&A”와 관련하여 회계법인에 의해 수행된 기업가치평가를 통해 산정된 “피투자기업”의 1주당 가치평가액을 말한다)

4. “피투자기업”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조건은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5. “피투자기업”의 분할 또는 합병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6차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우선주로서 받을 수 있는 대가보다 큰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보장되도록 6차 전환우선주의 전환조건이 조정된다.

6. 본 조에 의거한 전환비율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6차 전환우선주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보통주의 발행가액은 액면가를 하회할 수 없으며 “피투자기업”은 “전환우선주”의 전환권 행사 이전에 유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보통주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 될 경우에는 유무상증자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7. 본 조에 의거한 전환비율의 조정이 있게 된 경우, “피투자기업”은 1주일 이내에 “피투자기업”의 비용으로 본 조에 의한 조정치를 계산한 후, 조정 사유 및 내역에 대한 설명을 기재한 ‘우선주 전환비율 조정 확인증서’를 “회사” 또는 “전환우선주주”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8. 본 조의 각호에도 불구하고 조정되는 전환비율이 본 조 다른 항에 의한 기존의 전환조건 조정에 의해 확정된 전환비율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조건은 기존에 확정된 전환비율을 유지한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 조의 각 호는 중복적으로 적용한다.

④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 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으로 발행 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5.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6차 전환우선주의 주주는 신주인수권 행사로 배정받는 주식의 경우 무상증자의 경우 동종의 우선주로 하고, 유상증자의 경우 “피투자기업”이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한다.

2020년 06월 03일 변경      2020년 06월 09일 등기

7차전환우선주식

-7차 전환우선주식에 관한 내용-

1. 의결권에 관한 사항

① 7차 전환우선주는 일(1)주당 일(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7차 전환우선주의 주주는 “피투자기업”의 주주총회의 의결에 회부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② 7차 전환우선주가 4.에서 정한 전환조건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보통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③ 7차 전환우선주의 주주에게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전에 대하여 7차 전환우선주 주주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2.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 7차 전환우선주는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서 7차 전환우선주의 주주는 액면가 기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배당 받는다. “피투자기업”은 배당가능 이익이 있는 경우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우선배당률에 미달하는 부족 배당금은 차기에 이월하여 차기의 배당금과 함께 누적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7차 전환우선주에 대한 초년도의 배당 기산일은 7차 전환우선주 발행일이 속하는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된 것으로 보고 배당금을 계산한다.

③ 7차 전환우선주의 주주는 보통주의 배당률이 7차 전환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④ 7차 전환우선주의 주주는 주식배당의 경우 7차 전환우선주 주주의 선택에 따라 7차 전환우선주와 같은 종류의 우선주 또는 7차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보통주를 배당 받는다.

3.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 7차 전환우선주 주주는 “피투자기업”이 청산될 때 잔여재산분배에 대하여 전환우선주로서 투자한 주금 총액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는다.

② 7차 전환우선주 주주는 보통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7차 전환우선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4. 전환권에 관한 사항

① 전환기간

7차 전환우선주의 주주는 7차 전환우선주의 최초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7차 전환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존속기간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별도의 절차 없이 보통주로 전환된다.

② 전환방법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③ 전환비율

1. 7차 전환우선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2. “피투자기업”이 7차 전환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발행가격 등”을 정하여 “신주 등 발행”하는 경우 “회사” 및 “전환우선주주”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전환조건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단, 전환조건은 “전환비율” 즉, 7차 전환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를 말한다.

7차 전환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 = ( “전환우선주주”의 7차 전환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 / ( “전환우선주주”의 7차 전환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등” )

한편, 7차 전환우선주 발행 전에 기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의 주당 발행가격이 7차 전환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본 항에 의해 전환조건이 조정되지 않는다.

3. “피투자기업”의 “기업공개” 및 기업 인수, 합병 등과 관련하여, 7차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시 전환비율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조정된다.

(1) “피투자기업”이 “기업공개” 하는 경우, 7차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시 전환비율은 아래 중 높은 값으로 재조정 된다.

㉠ 직전 조정된 전환비율(4.㉓.1.항 및 4.㉓.2.항에 의해 조정된 전환비율을 말한다)

㉡ 「7차 전환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기업공개” 시의 ‘주당공모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나눈 값

(2) “피투자기업”이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및 해외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을 통해 우회상장(이하 “우회상장”이라 한다)하거나,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스팩 포함) 또는 비상장 기업과의 인수, 합병 등의 거래(이하 “M&A”라 한다)를 추진하는 경우, 7차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시 전환비율은 아래 중 높은 값으로 재조정 된다.

㉠ 직전 조정된 전환비율(4.㉓.1.항 및 4.㉓.2.항에 의해 조정된 전환비율을 말한다)

㉡ 「7차 전환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우회상장” 또는 “M&A” 시의 ‘주당가치평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나눈 값(단, ‘주당가치평가액’은 “우회상장” 또는 “M&A”와 관련하여 회계법인에 의해 수행된 기업가치평가를 통해 산정된 “피투자기업”의 1주당 가치평가액을 말한다)

4. “피투자기업”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조건은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5. “피투자기업”의 분할 또는 합병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7차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우선주로서 받을 수 있는 대가보다 큰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보장되도록 7차 전환우선주의 전환조건이 조정된다.

6. 본 조에 의거한 전환비율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7차 전환우선주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보통주의 발행가액은 액면가를 하회할 수 없으며 “피투자기업”은 “전환우선주”의 전환권 행사 이전에 유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보통주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 될 경우에는 유무상증자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7. 본 조에 의거한 전환비율의 조정이 있게 된 경우, “피투자기업”은 1주일 이내에 “피투자기업”의 비용으로 본 조에 의한 조정치를 계산한 후, 조정 사유 및 내역에 대한 설명을 기재한 ‘우선주 전환비율 조정 확인증서’를 “회사” 또는 “전환우선주주”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8. 본 조의 각호에도 불구하고 조정되는 전환비율이 본 조 다른 항에 의한 기존의 전환조건 조정에 의해 확정된 전환비율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조건은 기존에 확정된 전환비율을 유지한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 조의 각 호는 중복적으로 적용한다.

④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 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으로 발행 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⑤ 기타

(1) 7차 전환우선주에 대한 초년도의 배당 기산일은 7차 전환우선주 발행일이 속하는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된 것으로 보고 배당금을 계산한다

(2) 7차 전환우선주의 주주는 보통주의 배당률이 7차 전환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5.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7차 전환우선주의 주주는 주식배당의 경우 7차 전환우선주 주주의 선택에 따라 7차 전

등기번호	655396
------	--------

환우선주와 같은 종류의 우선주 또는 7차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보통주를 배당 받는다.  
 2020년 06월 03일 변경      2020년 06월 09일 등기

**기 타 사 항**

1.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020년 06월 05일 설치      2020년 06월 09일 등기

**주 식 매 수 선 택 권**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본 회사는 임,직원 등(상법 시행령 30조 1항에 따른 관계회사의 임직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조의3 1항에 따른 자 포함)에게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상법 340조의2, 542조의3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조의 3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542조의3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020년 05월 07일 변경      2020년 05월 14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임원 또는 직원 등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2020년 05월 07일 변경      2020년 05월 14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 2020년 05월 07일 변경      2020년 05월 14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 2020년 05월 07일 변경      2020년 05월 14일 등기 >

1.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사임 또는 퇴직한 경우  
 2)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2020년 05월 07일 변경      2020년 05월 14일 등기 >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655396
------	--------

회사성립연월일	2017년 07월 19일
---------	---------------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2017년 10월 24일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답연밭길 101, 에이동 1씨08호(서울대학교시스 템면역의학연구소)으로부터 본점이전 2017년 11월 01일 등기
--

수수료 700원 영수함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열 램 용